탑석센트럴자이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 (49형)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6. 11. 06. (금)】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십시오.
- 주택관리공단(주)경기주택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031-378-1040)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신청 관련 사항에 대해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 및 현장방문을 통한 직접 상담을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6.11.06.(금)**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입주자 선정과정에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2025.3.31.)에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신청자 보유 자산 판단 기준이 부동산·자동차가액 이외에 **금융자산·부채 등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단독 세대주(1인 가구) 신청 가능**합니다. (2024.12.5.「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시행)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본인 외 세대구성원(직계존비속, 배우자)이 없는 자를 말하며, 본인과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형제, 자매)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도 단독세대주(1인가구)임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단지별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20년 거주 이후 임차인에 대한 분양 우선권 없음)**
- 신청자는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청약과정에서 불이익(가점사항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하는 경우, 서류미제출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후에는 가점 산정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낮게 기입한 경우를 포함, "모든 수정이 불가"**합니다.
- 본 공고는 **1세대(해당 세대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순위 신청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예를 들면 1순위자가 1순위 접수일인 '26.11.16.(월)에 접수하지 않고, 2순위 접수일인 '26.11.17.(화)에 접수 시 부적격 처리)
- **선 순위 신청자가 모집 호수를 초과하면 후 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접수 마감 시 GH주택청약센터에 게시)**
- 본 입주자 모집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 주변 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청약은 GH주택청약센터를 통한 인터넷 청약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모바일청약 불가)**
 단, 만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으로서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약자에 한하여 '현장청약접수'를 진행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주소로 신청하셔서 안내문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 택 명	탑석센트럴자이
주택관리번호	2026980218

- **청약통장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 명의만 유효**하며, 가입은행 잘못 입력 등 모든 오기재 사항에 대해 정정 불가하며, 오기재 시 당첨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확인하며,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가점을 판단하므로 사업주체의 청약통장 조회시점 이후 변동사항(청약통장 부활, 추가납입 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의 종류·가입은행명·납입 횟수·가입 기간·예치금액 등 모든 정보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
 특히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한국부동산원에서 인정하는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전일(2026.11.05.)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입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신청 및 순위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합산 실적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서 조회된 내역으로만 인정하므로 반드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발급받아 금회 공고 인정 여부 및 인정 실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총자산, 자동차기준 초과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단지명	관할사무소		신청문의 전화번호
	사무소명	주소	
(의정부) 탑석센트럴자이	주택관리공단(주) 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지원단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30-13, 401호 (세교프라자)	031-378-1040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장기전세주택 사업지구 개요

구 분	(의정부)
위 치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10
공급호수	총 16동 2,571세대 중 1동 164세대
최초입주	'22년 3월

- 주택단지별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다르니, **주택단지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대상 주택 [주택형은 49A, 49B, 49C 통합하여 49형으로 모집]

단지명	주택형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구조/난방	관리 호수	대기 예비자	모집호수		
									계	입주자	예비자
탑석 센트럴 자이	49A	49.9285	17.4208	32.5564	99.9057	철근콘크리트 /개별난방 (도시가스)	164	0	70	14	56
	49B	49.9091	17.7556	32.5437	100.2084						
	49C	49.9438	17.6021	32.5664	100.1123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3. 임대조건

단지명	주택형	임대보증금(원)			비고
		계	계약금(계약 시)	잔금(입주 시)	
탑석센트럴자이	49 (A,B,C)	211,901,000	21,190,000	190,711,000	-

- 본 단지의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으로만 구성되며, **임대보증금의 임대료 전환은 불가**합니다.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계약금은 임대보증금의 10%이며, 잔금(90%)은 입주일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4.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6.11.0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총자산,자동차 보유기준'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 미성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 필요)

①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③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신청)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서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의 자격검증이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 신청불가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이 되어있지 않은 외국인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자, 공고일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해외체류자 등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세대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확인한 사람
-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1세대(해당 세대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① 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 신청하는 경우

② 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되는 경우

③ 그 외 중복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가 세대 분리하여 중복 신청하는 경우도 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table>
<tr><th>구분</th><th>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th></tr>
<tr><td>소득

※통계청 발표일
('26.2.27.)</td><td>
※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 전용면적 50㎡ 미만 (월평균소득 70% 이하까지 신청가능)

• 2025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월평균 소득('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없는 가구)
<table>
<tr><th>가구원수</th><th>월평균소득기준 (50%)</th><th>월평균소득기준 (70%)</th></tr>
<tr><td>1인가구(20%p↑)</td><td>2,669,354원 이하</td><td>3,432,027원 이하</td></tr>
<tr><td>2인가구(10%p↑)</td><td>3,519,762원 이하</td><td>4,693,016원 이하</td></tr>
<tr><td>3인가구</td><td>4,084,215원 이하</td><td>5,717,900원 이하</td></tr>
<tr><td>4인가구</td><td>4,401,101원 이하</td><td>6,161,541원 이하</td></tr>
<tr><td>5인가구</td><td>4,663,493원 이하</td><td>6,528,890원 이하</td></tr>
<tr><td>6인가구</td><td>4,953,132원 이하</td><td>6,934,384원 이하</td></tr>
</table>
• 2025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table>
<tr><th rowspan="2">가구원수</th><th colspan="2">'23년 3월 28일 이후
자녀 1명 있는 경우(+10%)</th><th colspan="2">'23년 3월 28일 이후 자녀가 2명이거나,
'23년 3월 28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20%)</th></tr>
<tr><th>월평균소득
기준 (50%)</th><th>월평균소득
기준 (70%)</th><th>월평균소득
기준 (50%)</th><th>월평균소득
기준 (70%)</th></tr>
<tr><td>1인가구
(20%p↑)</td><td>-</td><td>-</td><td>-</td><td>-</td></tr>
<tr><td>2인가구
(10%p↑)</td><td>4,106,389원 이하</td><td>5,279,643원 이하</td><td>-</td><td>-</td></tr>
<tr><td>3인가구</td><td>4,901,057원 이하</td><td>6,534,743원 이하</td><td>5,717,900원 이하</td><td>7,351,586원 이하</td></tr>
<tr><td>4인가구</td><td>5,281,321원 이하</td><td>7,041,762원 이하</td><td>6,161,541원 이하</td><td>7,921,982원 이하</td></tr>
<tr><td>5인가구</td><td>5,596,191원 이하</td><td>7,461,588원 이하</td><td>6,528,890원 이하</td><td>8,394,287원 이하</td></tr>
<tr><td>6인가구</td><td>5,943,758원 이하</td><td>7,925,010원 이하</td><td>6,934,384원 이하</td><td>8,915,637원 이하</td></tr>
</table>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td></tr>
<tr><td>자산
및
자동차</td><td>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이 아래 표의 기준 이하일 것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출생
자녀 수</th><th colspan="2">자산보유 기준금액</th></tr>
<tr><th>총자산가액</th><th>자동차가</th></tr>
<tr><td>'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td><td>1명</td><td>45,900만원 이하</td><td>4,996만원 이하</td></tr>
<tr><td></td><td>2명 이상</td><td>50,000만원 이하</td><td>5,451만원 이하</td></tr>
<tr><td>'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중, '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td><td>2명 이상</td><td>50,000만원 이하</td><td>5,451만원 이하</td></tr>
<tr><td>그 밖의 경우</td><td>-</td><td>41,700만원 이하</td><td>4,542만원 이하</td></tr>
</table>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만 해당
</td></tr>
</table>

• 자산기준 가산

-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는 '23.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산정방법</th></tr>
<tr><td colspan="2">소득</td><td>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td></tr>
<tr><td rowspan="5">총자산</td><td>부동산</td><td>•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td></tr>
<tr><td>자동차</td><td>•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td></tr>
<tr><td>금융
자산</td><td>•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예수금: 잔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td></tr>
<tr><td>기타
자산</td><td>•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td></tr>
</table>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총자산 산정시 자산합계금액에서 차감)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주택 소유 정보는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소득 및 총자산·자동차 가액 정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적 자료로 우리 공사는 공적 자료를 근거로 입주자격을 검증합니다.

※ 따라서, 조회된 공적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원천 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합니다.

※ 주택, 총자산,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되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금융회사의 카드론, 마이너스통장대출, 신용카드 연체대금, 개인 간 거래 등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시근로자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자료가 확인될 경우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② 근로복지공단 자료 ③ 국민연금공단 자료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⑤ 국세청 자료 순으로 반영됩니다.

※ 총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 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다만, 같은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입주 자격 중 주택 소유, 소득, 총자산, 자동차보유기준의 산정 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우리공사가 입주 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특성 상 공고일 전/후 자료가 조회될 수 있으며, 조회된 금액을 공고일 또는 현재 기준으로 변경하여 소명할 수 없습니다.

- (소득예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2026년 12월 소득이 조회된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26년 11월 소득이 아닌 조회된 2026년 12월 소득을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판단합니다.
- (자산예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2026년 12월 자산이 조회된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26년 11월 자산이 아닌 조회된 2026년 12월 자산을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판단합니다.

5. 선정기준

■ 선정절차

인터넷 청약접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접수 (등기우편)	입주자격 검증 및 부적격자 소명 처리	당첨자 발표	전자계약 (계약금 입금 후)
'26.11.16.(월) ~ 11.19.(목) 10:00 ~16:00	'26.11.20.(금) 17시 이후	'26.11.23(월) ~11.27.(금)	약 3개월 소요	'27.03.19.(금) 17시 이후	공실 발생 시 개별 안내
GH주택청약센터 (https://apply.gh.or.kr)	GH주택청약센터 (https://apply.gh.or.kr)	GH임대주택 지원단 (우편접수)	사회보장 정보망	GH주택청약센터 (https://apply.gh.or.kr)	부동산 전자계약

■ 선정방법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 양주시, 남양주시, 포천시, 서울 도봉구, 노원구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입주자 선정순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으로 자녀수가 많은자 → 배점이 높은자 → 추첨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 일반공급 배점기준표 (※ 일반공급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 분	3점	2점	1점
① 신청자 나이	만 50세 이상	만 40세 이상	만 30세 이상
② 부양가족수(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3인 이상	2인	1인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신청자 본인, 만 19세 이후 의정부시 전입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④ 미성년자녀수(태아 및 배우자의 전혼자녀,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 포함) * 만 19세미만	3자녀 이상	2자녀	-
⑤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60회 이상	48회 이상 60회 미만	36회 이상 48회 미만
⑥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부양의 의미는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⑦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⑧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또는 피보험자격 이력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 : 3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사람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에 따라 1년 이상 피보험자격 이력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건설일용근로자를 말한다)로 확인된 사람			

⑨사회취약계층(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내지 마목,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자 ※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구원 포함)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사.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 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고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카.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⑩ 공사 장기전세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기준 : 과거 공사 장기전세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장기전세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갱신계약은 제외) *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장기전세 신청 시, 명의변경 대상 임대주택의 최초 계약일(양도인의 최초계약일)이 감점 산정기준일임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만19세 이후부터 기산하며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의 미성년자녀수(재혼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 포함)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은 계속하여 부양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

①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전원** * 세대구성원의 태아 포함
②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단,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6. 공급일정

■ **인터넷 신청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

구분			신청접수	신청방법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기간	당첨자 발표	현장접수 계약장소
일반공급	월평균 소득 50% 이하	1순위	'26.11.16.(월) (10:00~16:00)	인터넷신청 GH주택 청약센터 (https://apply.gh.or.kr)	'26.11.20. (금) 17:00 이후 GH주택 청약센터 (https://apply.gh.or.kr)	※ 등기우편제출 **'26.11.27.(금) 등기우편소인 (접수도장)까지 유효함** 우편접수장소 : (우:18110)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30-13, 401호 주택관리공단 *현장접수자는 현장신청 시 서류제출	'27.03.19.(금) 17:00이후 [예정]	주택관리공단(주) 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지원단 **전화예약 ('26.11.11 ~ 11.12)** ※현장접수장소 별도안내 ※ 만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 예약자에 한함
		2순위	'26.11.17.(화) (10:00~16:00)					
		3순위	'26.11.18.(수) (10:00~16:00)					
	월평균 소득 50%초과~ 70%이하	1~3 순위	'26.11.19.(목) (10:00~16:00)	현장신청 만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 신청접수는 신청자격(공급유형 및 순위)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접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접수마감 시 접수마감일 16:00 이후 홈페이지 게시)**
- 인터넷 신청자중 서류제출대상자는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우편 제출 시 서류미도달이나 서류누락으로 인한 탈락책임은 본인에게 있사오니, 반드시 도달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순위 및 배점에 따라서 모집호수의 통상 1.5~2배수가 선정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배점이 낮은 신청자는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7. 신청방법

■ **인터넷(PC) 신청방법** ※ 모바일(핸드폰) 청약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인증서 준비 → ② GH주택청약센터 접속(https://apply.gh.or.kr) → ③ 인터넷신청 → ④ 신청완료

①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준비 ※ 카카오인증서는 사용 불가

- GH주택청약센터는 PC의 엣지, 크롬,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에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용 기능별 권장 브라우저는 [인증서 로그인]-[권장하는 브라우저 버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② GH주택청약센터 접속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 →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로그인

③ 인터넷신청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인증서 로그인	임대주택-인터넷 청약 클릭	단지 및 주택형 선택	순위선택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청약신청 정보 및 배점기준 정보 작성	신청내용 확인	청약신청서 제출

※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GH주택청약센터의 **「청약서비스 → 청약연습」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순위별로 접수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정을 확인(6.공급일정 참조)하시기 바라며, **인터넷신청 가능시간은 해당 접수일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16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하신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청일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신청 변경은 신청 당일만 가능합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청약은행, 청약납입횟수,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 입력에 따른 당첨탈락, 청약 시 입력 내용과 제출 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 바랍니다.**
-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어 탈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안내 **※ 모집공고일(2026.11.06.) 다음날부터 발급**

구 분	조 회 방 법
온라인발급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서비스 접속(www.applyhome.co.kr)→ 청약자격 확인 선택→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선택→ 순위확인서 발급하기 선택→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맞춤형 임대주택 선택)→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청약신청주택 선택→ 거주지 선택→ 연락처 입력→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은행(직접)방문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 확인

- 거주지역 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시 **공고일('26.11.06.)** 현재 **해당주택 건설지역(의정부시 거주시에는 해당주택 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상 당해지역 거주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 인터넷(PC) 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 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및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거짓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26.11.20.) 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께서는 발표내용에 우리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지정 주소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신청서 작성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현장방문 신청방법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장애인 등 사전에약자에 한함)

- **대상자 :** 만65세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 현장접수 시 신분증 및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지참 필수
- **현장접수 예약기간 : '26.11.11(수) ~ 11.12(목) 10:00~17:00**
- **현장접수 예약방법 : 주택관리공단**으로 **전화 예약 (전화번호 : 031-378-1040 *내선2번)**
- **현장접수처 :**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30-13, 401호 주택관리공단
- **현장접수를 위한 필요서류**
 - 청약 신청과 동시에 **필요서류(①신청자 신분 확인서류 및 ②청약신청 구비서류) 모두 구비**해서 현장접수 시 제출

① 신청자 신분 확인서류

구 분	구비 서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청약신청 구비서류 : **"8.신청 서류"에서 확인**

※ 정확한 접수를 위하여 현장접수 시 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시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청약 기간에는 극심한 혼잡으로 상담이 불가능합니다.

8. 신청서류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11.06.)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서류 제출방법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이후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해당 서류들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26.11.23.(월) ~ '26.11.27.(금)]** 내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를 받습니다.
서류제출기간 마감일('26.11.27.)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청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 우편 및 현장 접수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발송 주소
(18110)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30-13, 401호 주택관리공단 장기전세 담당자 앞

■ 기본서류

제출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발급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1)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첨2)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제출 (원본제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동의란(2곳) 모두 대상자 전원이 성명을 정자작성(사인불가) 및 도장날인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해당 구성원 이름으로 서명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 및 접수가 거부되며, 동의서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내용이 없는 경우 부적격(자격검증 불가) 처리됨**	인터넷 공고문 양식참고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별첨3)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 필수)**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확인서 (별첨4)	• **(작성 방법)**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및 전부표기"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행정복지센터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및 전부표기"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표기 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신청자)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모집공고일 현재 건설지역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에서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신청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행정복지센터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및 전부표기"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등록이 된 외국인인 경우(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행정복지센터
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태아 또는 양자를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배점의 부양가족수(주거약자용), 미성년자녀수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 입양관계증명서 :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해당기관

제출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발급처
(신청자) 신분증사본	• 본인 신분증 사본(앞면 만)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여권: 2020.12.21.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
(신청자) 청약순위확인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 가능) •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확인서는 온라인(www.applyhome.co.kr)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가능 ※ **주택관리번호 : 2026980218 (탑석센트럴자이)**	한국부동산원홈페이지/ 청약통장 가입은행

■ 배점기준 채점을 위한 제출 서류 (해당자만 제출, 미제출 시 가점을 인정받을 수 없음)

※ 일부 서류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 상	제출서류	발급처
①~③ 신청자 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행정복지센터
④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
⑤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 제외)인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이 아닌 경우)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중소벤처기업부)/ 등기소/ 국민건강보험공단
⑥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또는 피보험자격 이력이 있는 건설일용근로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등	건설근로자 공제회/근로복지공단
⑦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내지 마목,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자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세대원 포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서 -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지방보훈청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 액 이하인 사람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사회보장급여통지서에 첨부된 "소득 인정액 산정결과서"(수급자 신청 후 사회보장급여통지서를 수령하는데 시간이 통상 2달이 소요되므로 미리 발급신청 요망)	행정복지센터
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사본)	아동복지시설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임을 입증하는 서류	행정복지센터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증빙서류	관련기관

⑧「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인 연금 대상자 확인서(차상위초과부가급여 제외) 한부모가족 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복지센터
⑨ 영구임대주택에 거주(계약자에 한함)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임대차계약서(사본), 청약통장 1면(사본)	-

9.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 [2027.03.19.(금) 17:00 이후]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GH 청약센터(http://apply.gh.or.kr) 및 주택관리공단(http://www.kohom.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합니다.

(※ 실제 입주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계약안내 (예비입주자 순번 도래 시 별도안내)

○ **전자 계약**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 계약체결 절차】

계약금 납부	【1차】 우리공사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	【2차 SMS】 계약준비 완료안내	【PC 계약체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접속 (https://irts.molit.go.kr)	【모바일 계약체결】 "부동산 전자계약" 앱 다운로드 (Play스토어 / App스토어)
(고객)	(GH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고객)	로그인 → 계약체결 → 계약서 보관/출력 (휴대폰 / 공동인증서) (공동인증서) (공인전자문서센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시 SMS는 청약신청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온라인계약기간 내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하셨더라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 출력, 저장 가능합니다.

※ 사정상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 불가능할 경우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현장 계약**

- **인터넷 사용이 불가하여 온라인 계약이 어려운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전화 문의 시 별도 안내 드립니다. **※ 사정상 현장 계약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공통서류	대리 계약 시 추가서류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 (*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 가능) • 계약자 신분증 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 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 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 입주자 계약 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 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 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 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 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10. 유의사항

<table>
<tr><th>관련항목</th><th>유의사항</th></tr>
<tr><td>임대대상 및 조건</td><td>•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시)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을 납부하거나 퇴거(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table>
<tr><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비율</th><th colspan="2">할증비율</th></tr>
<tr><th>최초 갱신계약시</th><th>2회차이상 갱신계약시</th></tr>
<tr><td>10%이하</td><td>100%</td><td>105%</td></tr>
<tr><td>10%초과 30%이하</td><td>105%</td><td>110%</td></tr>
<tr><td>30%초과 50%이하</td><td>110%</td><td>120%</td></tr>
<tr><td>50%초과</td><td>퇴거</td><td>퇴거</td></tr>
</table></td></tr>
<tr><td>신청자격</td><td>•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서 정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격 참조)

• 이 주택의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및 계약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포함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처리합니다.</td></tr>
</table>

신청방법	• 인터넷신청 또는 현장방문신청 방법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신청방법 참조)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에는 신청서 내용의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는 제출 이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첨안내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발표일 후,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안내	• 당첨자가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시까지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총자산 및 자동차요건 충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세대구성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입주안내	• 이 주택에 입주 전에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적격자로 인정될 경우에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계약 전에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공공주택 특별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단지 여건	**※ 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단지여건 • 1101동 서측, 1105동 남측과 1115동 및 1116동 남서측에는 소공원이 위치하여 소음 피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116동 북측에는 '소공원-1'용 노외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어 통행 차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및 소음 피해와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제외한 소형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제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부출입구('시민로'변, '소공원 1'변)는 주차 차단기로 외부차량의 진출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소형 보행자통로는 외부인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상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된 1112동과 1113동 사이부터 1109동과 1114동 사이 보행통로는 공공의 보행통로로 이용됩니다. • 유아 놀이터는 어린이집 전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입주자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노출되어 있고,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경 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자이안센터),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인근 세대는 해당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옥외엘리베이터등)로 인해 조망권침해 및 소음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설별 위치 - 주민공동시설 : 자이안센터 1109동, 1110동 및 1112동 지하층, 게스트하우스 1101동 1층, 도서관 및 독서실 1103동 북측-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실 및 어린이집 1103동 북측, 경로당 1110동 1층- 근린생활시설 : 1101동 북측 및 1108동 남측 • 주민공동시설 샤워실에 따른 급탕용 보일러 연도가 외부에 설치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음 열기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됨에 따른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며 해당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환기설비 및 제습기(최하층)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무인택배시스템에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 택배함은 지하주차장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AMR)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빗물 재활용을 위해 지하저수조와 빗물저류조가 설치되어 있으며,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됩니다.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Top Light, 제연휀룸, D.A)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아파트 지하 3,348대, 근린생활시설 14대로 총 3,362대(장애인주차 포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구조형식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동 직하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주차출입구는 별도로 구분되어있지 않으며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3개소입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이 불가합니다.
-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과 연결된 층수 및 연결통로의 길이와 형태는 동별로 상이하니 계약 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특성상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지하 3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나, 구획별로 지하주차장 층수가 상이합니다.
- 지하2층 주차장은 전동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하며, 지하1층 주차장은 1101동~1112동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하며, 지하3층 주차장은 1109동~1116동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은 아파트와 분리되어 있으나, 아파트 주출입구를 같이 사용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1101동 북측 근린생활시설용 지상주차장 및 1108동 전면 지하 1층 주차장 내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화재 등 유사시에는 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대피하거나 경량칸막이를 통해 인접세대로 대피, 별도의 대피공간으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1층 및필로티 상부세대 제외)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실외기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인허가상 불가피한 사항이며, 시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층세대의 테라스 및 팬트하우스의 옥외공간은 설계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용공간으로 다른 세대의 진입은 불가능하나 해당 세대의 전용공간이 아니므로 공용설비 및 시설물유지를 위한 진입요구시 개방하여야하며, 등기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합니다. (집합건물법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본 아파트는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를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층·호수는 동·호수 배치도를 필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배치 상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 분리 수거시설, 정화조 연동시설과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인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및 공원, 휴게소, 중앙광장, 옥외운동시설, 주차장 진출입구, 승강기, 각종 기계/환기/공조/전기 설비 등에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등의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간에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 습도 등 생활 여건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창 표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실내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단지 주변은 향후 사업자의 개발계획에 따라 건축물 준공 시 향, 조망, 소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1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 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부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부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자산	일반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 지방세정 자료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예치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13.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유의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단지명	구 분	적용 여부
의정부 탑석센트럴자이	고기밀창호	적용
	고효율 자재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절수설비	적용

14.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구분	시행사	시공사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의정부 탑석센트럴자이	송산생활권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235-82-00015)	지에스건설㈜ (110111-0002694)	-	㈜진관건설엔지니어링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업소 ㈜아이비엔지니어링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재건축 · 재개발아파트를 매입하여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입니다.

2026. 11. 06.

경기주택도시공사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주)경기주택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

(별첨1 앞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 받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기본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소, 거주시작일, 신청인과의 관계)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나. 수집·이용목적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다. 수집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이용기간: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3.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나.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다. 민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민감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민감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등"에서 제외되고, 장애인 관련 배정 적용대상 및 편의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선택]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별첨1 뒷면)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여부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신청인과의 관계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한국부동산원,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 (가입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정보,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5.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선·휴대전화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선택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분양·임대주택의 청약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선택]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20 . . .

경기주택도시공사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주)경기주택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장 귀하

(별첨 2)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2. 29.>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필수)

1. 공공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휴대전화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2] (서명 또는 인)
본인		– / – –		
		– / – –		
		– / – –		
		–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등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2 0 □ □ 년 □ □ 월 □ □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시 유의사항(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작성예시 참고)

○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여부, 작성년월일'** 란은 **최대한 점선 안에 정자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자(계약자) 및 모든 세대구성원 각자가 자필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 (금융정보에 대한 조회 특수성을 감안 **특정 일인의 일괄 작성 및 서명은 불가**)

○ 신청자 자신이 조회 대상일 경우 양식 내 1. 신청자 인적사항 과 2. 금융제공 등 제공 동의자 란에 '본인' 을 기재 후 **모두 작성**

○ 양식 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2곳 모두 서명 또는 날인**

○ 금융제공 동의서 양식은 **임의로 절대 수정 불가**(만일 추가 세대원 기재가 필요할 경우 동의서를 1장 추가하여 작성)

○ 작성시 연필 또는 연한 볼펜 사용보다는 **선명한 플러스펜**을 사용하기를 권장

○ **만 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작성예시]

1. 점선안에 정자체로 작성하고, 만14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가 서명
2. 추가 세대원 기재가 필요한 경우는 동의서 1장 추가하여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2. 29.>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필수)

1. 공공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홍길동	501225 - 1234567
주 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00로 ~ (주소 끝까지 기입할 것)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휴대전화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2) (서명 또는 인)
본인	홍길동	501225 - 1234567 / 010-9999-8888	홍길동	홍길동
배우자	이영희	500122 - 2107070 / 010-7777-6666	이영희	이영희
자	홍00	190515 - 3333333 / -	홍00	홍00
자	홍△△	210420 - 3333333 / -	홍△△	홍△△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등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2024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첨3)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필수)

※ 해당사항이 없어도 아니오 체크 및 서명 후 반드시 제출

※ 구분-[부채]-[임대보증금]이란?**임대인으로서 받은 보증금이 있는 경우**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 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 아니오 ☐		원	[임차인]	
				원	[임차인]	
	분양권	예 ☐ 아니오 ☐		원	[수분양자]	
				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 아니오 ☐		원	[주주(보유자)]	
				원	[주주(보유자)]	
	출자금/ 출자지분	예 ☐ 아니오 ☐		원	[출자자]	
				원	[출자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 아니오 ☐		원	[임대인]	
				원	[임대인]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	예 ☐ 아니오 ☐		원	[차주]	
				원	[차주]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제출하여야 함.**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인)

20 년 월 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위대리인 주택관리공단(주)경기주택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장 귀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별첨 4)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필수)

확인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본인은 **탑석센트럴자이(49형)단지** (예비)입주자로 공급을 신청함에 있어 **해당 단지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에 선정되어 있던 동일한 주택유형(장기전세주택) 단지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함을 확인합니다.

※ 참고사항

단, 예비입주자로 선정됨의 기준은 ①입주자모집 공고일이며,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됨

20 년 월 일

확 인 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주)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지원단장 귀하

(별첨 5)

위 임 장

아래 수임인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임대하는 「_____장기전세주택」 공급신청 및 계약과 관련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수임인(대리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핸드폰) (유선)

■ **위임인(신청인)**

성 명 : (인) (인감또는 서명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핸드폰) (유선)

첨부서류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20 년 월 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주)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지원단장 귀하